ESG 리스크 관리 지침

2022. 05. 25.

주식회사 지누스

전 문

회사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체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주주 친화적이며 기후변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비재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트랜드이자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지누스 (이하 '회사')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회사가 가진 능력을 고려하여 친환경 경영 (Environmental), 미래 지향적 사회책임 경영 (Social Responsibility), 투명한 지배구조 (Governance)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본 지침의 제정을 통해 임직원 전체가 업무 전반에서 걸쳐 ESG 관련 RISK에 대응하고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친환경 경영 (Environmental), 미래 지향적 사회책임 경영 (Social Responsibility), 투명한 지배구조 (Governance)를 (이하 'ESG')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적용범위

ESG 업무의 수행 및 관련 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그 외 회사의 관련 헌장 및 규정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행 및 지원 부서

ESG 경영은 회사 전 임직원이 실천해야 하며, ESG에 대한 평가, 공시, 대외 기관 대응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 총괄부서인 경영전략팀에서 지원한다.

제2장 환경경영 지침

제4조 환경경영 세부지침

① 환경경영 계획

1. 최고경영자는 대내외적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며, 이를 환경경영 전략 및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은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전략 및 방침과 통합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3. 회사는 환경친화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전담조직 구성 및 회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환경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경영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 실행

1. 회사는 자원을 절감하고 폐기물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활동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전 과정 (Life Cycle)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한다.

3. 회사의 환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법규 위반 및 환경 사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③ 환경성과 관리 및 보고

1. 회사는 산업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 성과를 평가하며, 결과 중 특이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환경 경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5조 보고 의무

환경경영에 임하는 회사 임직원들은 제4조 환경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토록 하며,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제3조 총괄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책임경영 지침

제6조 사회책임경영 세부지침

① 근로자 대우

1. 회사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법령과 사회의 적합한 수준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해고 관행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상해, 질병, 임신, 육아, 노령, 실직, 장애 등의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노사간의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의 요구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힘쓰며, 건강하지 못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협력회사 및 경쟁사

1. 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한다. 또한 건전한 회사 문화 조성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권력 남용, 뇌물 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여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③ 소비자

1. 회사는 광고, 마케팅 및 소비자와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규제 당국이나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회사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집, 사용, 관리하여 소비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4. 회사는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특히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그 의견을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한다.

④ 지역사회

1. 회사는 기부금 제공, 봉사활동 수행, 교육 기회 증대, 문화 활동 지원 및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2. 회사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7조 보고 의무

사회책임경영에 임하는 회사 임직원들은 제6조 사회책임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토록 하며,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제3조 총괄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지침

제8조 지배구조 세부지침

① 주주

1.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주주제안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설명해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자투표 제도 또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4. 주주는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또는 최대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등)를 원천 차단하고, 내부거래위원회와 실무 부서의 검토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2. 이사회를 지원하는 법무, 경영관리, 회계 부서들은 이사의 이사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원활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전자적 방식의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원활한 이사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이사회 이사에 회사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 인사 평가 및 검증 시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검토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5.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고 다수의 겸직을 피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는 결격 사유를 정확히 검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총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이사회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은 의견을 개진한 이사 개별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은 공개토록 한다.

8.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각 규정을 제정하고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9.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감사 기구

1. 회사는 내부 감사 기구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법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감사 기구가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 위원회 외부 감사인의 회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감사위원회 매 회의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 사항과 결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 감사로 인해 감사 대상 회사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자

1.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기 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의무

지배구조 관련 업무에 임하는 회사 임직원들은 제8조 지배구조 세부지침을 준수토록하며,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제3조 총괄 부서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